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569-10

2024 한권으로 OK







#### 머리말

지난해 말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일반 국민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 관련 세금문제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은 시중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식과 세금」 책자를 처음으로 제작·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간하는 '주식과 세금' 책자는 주식거래의 기초상식과 주식의 취득 부터 보유 및 처분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를 총 76개의 문답형식으로 구성하는 한편,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독성을 제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절세 꿀팁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하여 활용성도 강화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책자가 주식등 관련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 5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서술한 것으로 모든 법령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령이 개정되거나 법령의 해석이 변경되어 본 책자의 내용과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과 해석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발간일 현재 개정된 법령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시행이 유예된 법령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책자에 표기된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세율이며, 법령의 표기방식은 일부 아래와 같이 간소화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법령명	표기 방식
국세기본법	국기법
소득세법	소득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증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증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상증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본 자료는 주식을 거래할 때 과세되는 세금에 대하여 납세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일반적인 사항 위주로 수록하였으며, 개별사안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잠	주식등 과세이해를 위한 기초지식			
1.	주식의 개념과 종류가 궁금해요	3		
2.	주식시장에 대해 알고 싶어요	5		
3.	상장이란 무엇인가요?	8		
4.	주식거래 절차도 알고 싶어요	10		
5.	상장주식 매매거래의 종류 및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2		
6.	주식 매매계약은 어떻게 체결되나요?	14		
7.	단일가매매와 접속매매의 적용시간에 대해 알고 싶어요	19		
8.	기타 매매계약체결방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22		
9.	상장주식 거래 후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26		
10.	주식과 유사한 금융투자상품도 많던데 금융투자상품이란 무엇인가요?	28		
11.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	29		
제2잠	주식등 양도소득의 이해			
제1절	주식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	37		
12.	주식등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를 알고 싶어요	37		
제2절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38		
13.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38		
1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39		
15	양도라 무엇인가요?	42		

제3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 43
16.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궁금해요	43
1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중 최대주주 판정 시 보유지분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44
1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46
19.	상장주식을 연도 말에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나요?	48
20.	법인이 연도 중 신설되었거나 합병·분할한 경우 대주주 요건 판정기준일은 언제가 되나요?	49
21.	기타 대주주 판정 시 유의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50
22.	'23년 말에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 되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51
23.	비상장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대주주만 해당되나요?	52
제4절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54
24.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54
25.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55
26.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국내주식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56
27.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요?	57

제5절	주식등의 양도·취득시기	58
28.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58
제6절	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	60
29.	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60
30.	수차례에 걸쳐 다른 기액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63
31.	주식등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64
32.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받는 건가요?	65
33.	여러 주식종목을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종목과 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혼재된 경우 이를 통산할 수 있나요?	67
34.	금년에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치손이 발생한 경우 내년으로 이월 하여 내년도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68
35.	국내주식은 이익이 발생했는데 미국주식은 손실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미국주식의 손실을 통산할수 있나요?	69
제7절	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	70
36. 37.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홈택스 등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70 71
〈핵심〉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	72

제3잠	주식등 거래 관련 기타 세금	
제1절	주식등 거래 관련 증권거래세 등	77
38.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외에 다른 세금도 납부해야 하나요?	77
39.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나요? …	78
40.	국외 전출할 때 내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하던데?	79
제 2 절	주식등 증여 관련 증여세	83
41.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상장주식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83
<b>42</b> .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경우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	85
<b>43</b> .	주식등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86
44.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89
45.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에 대해 알고 싶어요	90
제 <b>4</b> 잠	<b>파생상품 양도소득의 이해</b>	
46.	파생상품이란 무엇인가요?	97
<b>47</b>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은 무엇이 있나요? ····	100
48.	파생상품의 양도·취득시기 및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	101
4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별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102
<b>50</b> .	파생상품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112
51.	주식워런트증권(ELVV)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지분증권인 주식등의 양도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113
<b>52</b>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율은 주식과 다른가요?	114
53.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115

제5잠	배당소득의 이해	
54.	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119
<b>55</b> .	종합소득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120
<b>56.</b>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요?	123
<b>57</b> .	배당소득세가 궁금해요?	125
58.	비과세, 감면 등 과세되지 않는 배당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128
<b>59.</b>	배당소득이 발생한 날은 언제가 되는 건가요?	130
<b>60.</b>	배당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31
61.	상장주식 보유 시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나요?	133
<b>62</b> .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종합과세 방법은?	136
<b>63</b> .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37
64.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40
<b>65</b> .	배당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의 공제방법을 알려주세요	141
제6잠	주식의 평가	
66.	주식평가는 왜 하는 건가요?	145
67.	평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68.	주식 평가방법을 알려주세요	149
69.	주식평가 시 시가란 무엇인가요?	153
70.	시가가 없는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155

7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156
72.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159
<b>73</b>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163
74.	특수한 경우의 주식평가 방법도 알려주세요	165
제 <b>7</b> 잠	주식 관련 조세특례	
7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뭔가요?	169
<b>76.</b>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세금혜택은 없나요?	174
제8잠	절세 꿀팁 모음	
1. 주식 9	양도소득세 절세1	77
꿀팁1	. 손실 활용(실현)하기	177
꿀팁2	。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178
꿀팀3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179
2. 주식	증여세 절세1	80
꿀팁4	。'상장주식 증여' vs '주식취득자금 증여'	180
꿀팁5	.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를 고려하세요	180
꿀팀6	. 비상장주식 거래 시 유의사항	181
3. 기타 <sup>3</sup>	절세1	81
꾹틴7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하기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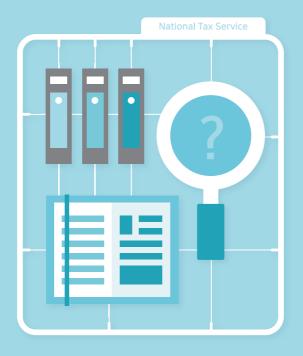
제9참 자주 실수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사례

1,	세율적	요 ○	185
	사례1.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185
	사례2.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186
	사례3.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사례	187
	사례4.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5%)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율 적용을 잘못한 사례	188
	사례5.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	189
	사례6.	신주인수권 단기 양도 후 단기 양도세율(30%) 미적용 사례	190
2.	. 대 <del>주주</del> <sup>:</sup>	판단	191
	사례7.	이혼한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	191
	사례8.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새로 매수한 주식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192
	사례9.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하여 대 <del>주주</del>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193
3.	손익통	산	194
	사례10.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194
	사례11.	예정신고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한 사례	195
	사례12.	손익통산 순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	196

### 목차

4	. 기본 공자	· · · · · · · · · · · · · · · · · · ·	197
	사례13.	기본공제를 매 예정신고마다 중복 적용한 사례	197
5	기타		198
	사례14.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198







## 제<sup>I장</sup> 주식등 과세이해를 『위한 기초지식』

<sup>1)</sup> 제1장의 내용은 한국거래소 발간 '알고싶어요 주식시장' 및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 게재된 내용 등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01 | 주식의 개념과 종류가 궁금해요



주식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확장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자에게 자금을 보탠 대가로 발행해 주는 증서로서 주식 회사의 소유지분을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주식은 주권(증서)에 액면가액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기명·날인 유무, 재산적 내용, 의결권 유무, 상장 여부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됩니다.



### 가. 주식이 개념

주식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확장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자에게 자금을 보탠 대가로 발행해 주는 증서로서 주식회사의 소유지분을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주식은 작은 금액의 단위(1주당 100원 이상)로 발행되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사정에 맞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주식회사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을 제공받아 그것을 원천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죠.

주식을 소유한 사람을 주주라고 하고, 주주는 회사의 자본금 중 자신이 출자한 금액 만큼 회사의 주인이 되며,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회사 측면에서는 주주가 출자한 자금만큼 자기자본이 형성되고 만기의 개념이 없어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되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면 되기때문에 차입이나 채권발행에 비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주주는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소유자로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주주는 자본의 출자의무를 지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자가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나. 주식의 종류

주식은 주권(증서)에 액면가액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기명·날인 유무, 재산적 내용, 의결권 유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종류	내용		
	보통주 (Common Stock)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는 일반적인 주식		
	우선주 (Preference	보통주에 비해 재산권적 내용(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 대개의 경우 보통주와		
우선권	Shares)	자에서 구선적 서ਜ기 한경되는 구석. 데게의 경우 모등구되 달리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음		
여부	상환우선주(RPS)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이 부여된 우선주		
	전환우선주(CPS)	다른 종류의 주식(통상 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RCPS)	상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우선주		
발행	구주	회계연도 개시일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 회계연도 개시일이 배당기산일임		
시기	 신주	증자 등으로 회계연도의 중간에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배당 기산일은 일반적으로 발행일임		
기명	기명주	주식소유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		
여부	무기명주	주식소유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		
상장	상장주식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여부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이 아닌 주식		

### 02 | 주식시장에 대해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장내 주식시장과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거래되는 장외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장내주식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이 있으며, 장외주식시장에는 K-OTC 시장이 있습니다.



### 가. 주식시장의 구분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장내주식시장과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거래되는 장외주식시장이 있습니다.

#### 1) 장내주식시장

장내주식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5. 1. 한국거래소가 출범하면서 과거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운영하였던 시장은 유가증권시장으로 ㈜코스닥증권시장에서 개설·운영하였던 시장은 그대로 코스닥시장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식시장을 계속적으로 분리·운영하는 이유는 각각의 시장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가) 유가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에는 규모가 크고 경영실적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들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 나) 코스닥시장

코스닥시장은 1996. 7. 정부의 유망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은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을하고 있습니다.

### 다) 코넥스시장

2013. 7.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 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을 코스닥시장 산하에 개설하였습니다. 코넥스시장은 벤처 캐피털과 같은 모험자본의 선순환(투자회수↔재투자) 체계를 지원하는 시장으로 초기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상장요건의 완화, 공시항목의 축소, 지배구조 의무 완화 및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 기회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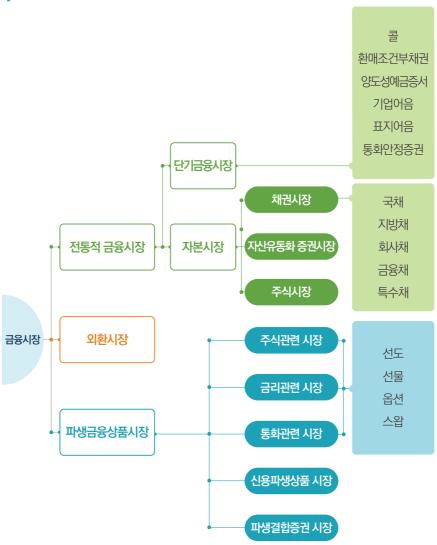
#### 2) 장외주식시장(K-OTC 시장)

K-OTC시장은 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일종의 장외시장으로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0. 3. 한국증권업협회가 제3시장으로 개설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5. 7. 정부의 벤처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그 명칭을 프리보드로 바꾸게 되었고, 2013년 7월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시장 개설을 계기로 K-OTC시장으로 명칭을 바꾸어 중소기업을 포함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전용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분	장내시장			장외시장
千正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OTC
설립시기	1956. 3.	1996. 7.	2013. 7.	2000. 3.
시장특성	중대형, 우량기업 위주	중소벤처 및 성장기업 위주	초기 중소·벤처기업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포함)





### 03 | 삼잠이란 무엇인가요?



상장(Listing)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은 거래소에 최초로 상장되는 신규상장을 의미하며, 이 밖에도 재상장. 우회상장. 추가상장. 변경상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가. 상장의 개념과 의의

주식시장에는 개인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자가 참여하므로 이들의 보호가 중요한 과제 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식 발생회사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한 상장 절차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장(Listing)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은 거래소에 최초로 상장되는 신규상장을 의미하며, 이 밖에도 재상장, 우회상장, 추가상장, 변경상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상장은 상장폐지 후 5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와 인적분할로 신설된 기업이나 상장법인 간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이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우회상장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M&A 등의 방식으로 경영지배권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상장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추가상장은 상장법인이 유·무상증자 등으로 새로이 발행하는 주권을 상장하는 것을 말하고, 변경상장은 기존에 발행된 주권을 새로운 주권으로 교체발행하여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기업은 일반투자자로부터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기업분할 재상장 제도, 지주회사 상장제도 등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고, 기업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인식이 제고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등에서 상장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특례규정에 따른 법적 측면의 효과와 세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 04 | 주식거래 절차도 알고 싶어요

한국거래소시장에서 주식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 회사에게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매매하려면 우선 증권회사에 가서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은 증권회사와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카드(ID)또는 통장을 교부받습니다.

거래계좌가 설정되면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매매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매주문은 영업점에서 주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HTS(Home Trading System)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 상장주식거래의 일반적인 절차

한국거래소시장에서 주식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에게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매매하려면 우선 증권회사에 가서 주식거래계좌를개설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은 증권회사와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카드(ID) 또는 통장을 교부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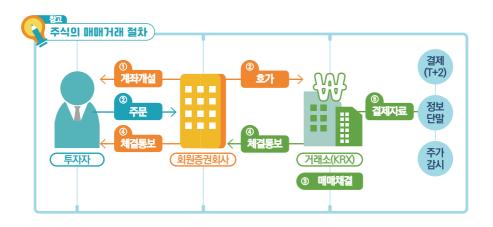
거래계좌가 설정되면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매매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매주문은 영업점에서 주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HTS(Home Trading System)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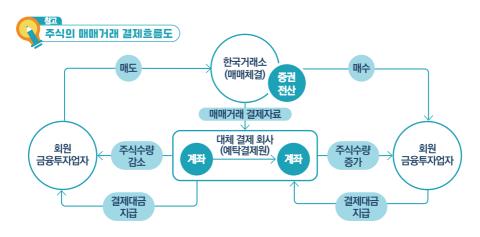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 당해 고객의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충분히 예치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 다음 그 주문을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시스템으로 전달합니다. 주문이 매매체결시스템에 접수되는 시점에 조건이 맞는 상대주문이 있으면 즉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매매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당일 시장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조건이 맞는 상대주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그 주문은 매매가 체결되지 않습니다.

거래소의 주식시장에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면 주식을 산 사람은 매수대금을, 판 사람은 매도한 주식을 서로 주고 받는 절차, 즉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결제방법은 각 나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은 매매체결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두 번째 영업일에 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투자자는 통상 증권회사에 위탁수수료를 내야하며, 주식을 매도한 때에는 매도 대금의 0.1 ~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농여촌특별세 포함)를 내야합니다.





N

### 05 나 상잠주식 매매거래의 종류 및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립니다. 주식시장에는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이 있습니다. 정규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단일장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정규시장 외에 추가적인 매매거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시간외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시장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 장개시전시간외시장과 오후 3시 40분부터 6시까지 열리는 장종료후시간외시장이 있습니다.



### 가 상장주식 때때거래이 종류 및 시간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립니다. 주식시장 에는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이 있습니다. 정규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단일장 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정규시장 외에 추가적인 매매 거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시간외시장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시장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 장개시전시간외시장과 오후 3시 40분부터 6시까지 열리는 장종료후시간외 시장이 있습니다.

시간외종가매매는 장종료 후 또는 장개시 전 일정 시간 동안 호가를 접수하여 조건이 맞는 호가가 있는 경우 즉시 매매를 체결시키며,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장종료 후 10분 단위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시킵니다.

이외에 정규시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매매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량매매 시장을 정규시장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량매매시장에는 시간외대량매매와 장중 대량(바스켓)매매가 있습니다.



<sup>\*</sup> 단, 장 개시 전 종가매매는 08:30 ~ 08:40 (10분)

### 06 | 주식 매매계약은 어떻게 체결되나요?

상장된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은 거래방식 등에 따라 단일가매매 또는 접속매매의 방법으로 체결됩니다.

단일가매매는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 균형가격형성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이용되는 매매방법으로서 일정시간동안 매도·매수호가를 접수하여 가격 및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 간에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며,

접속매매(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매매거래 시간 중에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 즉 먼저 접수된 호가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매매방법으로서, 가격우선의 원칙과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 가. 매매계약체결방법

### 1) 단일가 매매

단일가매매는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 균형가격형성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이용되는 매매방법으로서 일정시간동안 매도·매수호가를 접수하여 가격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 간에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며, 모든 단일가매매는 마감시점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해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임의의 시간에 종료됩니다.

즉, 투자자 주문을 접수 즉시 체결시키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가격으로 일시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서 시가 및 종가 등을 결정하는 경우와 거래소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과거에는 단일가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우선순위는 동시호가로 간주하여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001년 9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되 예외적로 동시호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가매매에 참여한 호가의 경우에도 가격우선 및 시간우선 원칙에 따라 우선 하는 호가간에 전량을 체결하고, 동일가격대의 호가간에는 수량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단, 시가(정규장 최초의 가격) 또는 장이 중단된 후 재개된 첫 가격이 단일가매매 방식을 통해 상·하한가로 형성되는 때에 한하여 상한가의 경우 당해 가격대의 매수호가, 하한가의 경우 당해 가격대의 매도호가에 대해서만 체결수량을 배분합니다. 이는 상·하한가로의 시가 형성 시에 수량을 배분함으로써 당일 중 매매체결을 원하는 투자자의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래 예에서와 같이 가장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와 가장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를 순차적으로 체결시키고 15,250원인 동일가격에서도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여 매매를 체결합니다.



매도수량	가격	매수수량
	15,400	<b>1</b> ,000
00	15,350	● 300
00	15,300	● 200
100 ● 500 ① 1,000 ○ 2,000 ○	15,250	<ul><li>200</li><li>300</li></ul>
150 ●	15,000	00
150 <b>●</b> 500 <b>●</b>	15,150	0
500 ●	15,100	000
150 ●	15,050	

○ 미체결 호가 ③ 일부 체결호가 ● 전량체결호가 (각 칸의 상단 주문이 우선 주문임)

예시의 표는 단일가매매시간동안 접수된 호가 현황입니다.

이들 호가를 가지고 합치되는 하나의 가격을 정하여 체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매수호가와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수량부터 지워나가다 보면 조건이 합치되는 가격에 도달하게 됩니다. 위의 그림에서는 15,250원이 합치되는 가격인데요, 매수수량에 검은 동그라미로 표시한 2,000주와 매도수량에 검은 동그라미로 표시한 2,000주가 단일가매매 종료 시점에 체결이 됩니다. 이때 체결가격은 모두 15.250원이 됩니다.

매도호가 15,250원에 500주를 낸 매도자는 450주만 체결이 되며, 남은 50주는 15,250원 이상으로 매수하겠다는 희망자가 나와야 체결이 됩니다. 1,000주 매도자는 전량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 2) 접속 매매

접속매매(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매매거래 시간 중에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 즉, 먼저 접수된 호가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매매방법으로서, 가격우선의 원칙과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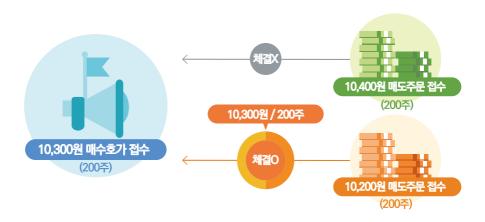
즉 장중에 이미 나와있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보고 그 가격에 맞게 주문을 내면 조건에 맞는 경우 즉시 체결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1, 2, 3) 등 번호는 호가접수 순서입니다)



매도수량	가격	매수수량
	10,500	
2 200	10,400	
	10,300	1 200
3 200	10,200	
	10,100	

- ① 200주 10,300원에 매수호가가 있는 상태에서 ② 200주 10,400원에 매도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가격이므로 체결이 되지 않으며 다음 주문을 기다리게 됩니다.
- ③ 200주 10,200원에 매도호가가 접수되면, 매도희망가보다 더 높은 매수가격 (10,300)이 있으므로 체결을 시킵니다. 이때 체결가격은 먼저 접수한 가격(선행호가)인 매수호가에 맞추어 10,300원에 200주가 체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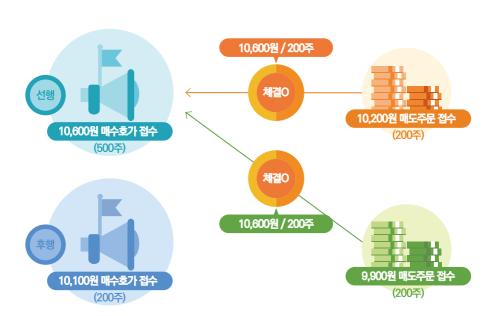


매도수량	가격	매수수량
	10,600	1 500
	10,500	
	10,400	
	10,300	
3 200	10,200	
	10,100	2 200
	10,000	
4 200	9,900	

N

0

4 200주 9,900원에 매도호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때 매수호가에는 10,600원에 300주와 10,100원에 200주 호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둘 다 9,900원 매도 희망가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1 호가가 가장 먼저 접수된 호가이므로 9,900원 접수한매도자는 10,600원에 매수주문을 낸 매수자와 체결이 이루어지며 체결가격은선행호가인 10,600원이 됩니다.



# 07 | 단일가매매와 접속매매의적용시간에 대해 알고 싶어요



### 정규시장 거래방법 및 시간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구분	거래 시간
오전 단일가매매	08:30 ~ 09:00
접속매매	09:00 ~ 15:20
오후 단일가매매	15:20 ~ 15:30

### 시간외시장 거래방법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거래 시간
장 개시 전 종가매매	08:30 ~ 08:40
장 마감 후 종가매매	15:40 ~ 16:00
시간외단일가	16:00 ~ 18:00



### 가. 주식시장의 장문영 시간

단일가매매와 접속매매의 차이점을 이해하였다면, 단일가매매와 접속매매가 각각 적용되는 시간을 알필요가 있습니다

### 1) 정규시장

정규시장 거래 시간은 09:00 ~ 15:30 까지라고 말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구분	거래 시간
오전 단일가매매	08:30 ~ 09:00
접속매매	09:00 ~ 15:20
오후 단일가매매	15:20 ~ 15:30

단일가매매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전 단일가매매시간동안 접수된 주문을 가지고 하나의 가격이 정해지며 그것이 그날의 시초가(시가)가 되어 09:00에 장이 개시되며 체결이 됩니다.

그 이후 15:20까지는 접속매매시간으로 주문이 접수되는 즉시 조건이 맞으면 실시간 으로 체결이 됩니다.

(다만, 거래소가 정하여 발표하는 경우에는 전 종목 또는 특정종목에 대하여 단일가매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후 단일가매매시간에는 그 날 정규시간동안 접수된 주문과 마지막 10분 동안 접수된 주문 모두를 가지고 하나의 가격이 정해지면서 체결이 되며 그날의 종가가 됩니다.

#### 2) 시간인시장

시간외시장 거래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거래 시간
장 개시 전 종가매매	08:30 ~ 08:40
장 마감 후 종가매매	15:40 ~ 16:00
시간외단일가	16:00 ~ 18:00

장 개시 전 종가매매시간은 무조건 전일종가로 거래하는 시간이며, 장 마감 후 종가 매매는 당일의 종가로만 거래하는 시간입니다. 이때에는 가격은 입력하지 않고 수량만 입력하여 주문을 내며,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체결이 됩니다.

시간외단일가는 10분 단위로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하여 주문을 체결시키는 시간 입니다.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10% 상승 또는 하락한 가격으로 주문을 낼 수 있으나. 당일 정규시장의 상 하한가를 벗어난 주문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규장 마감 후 주식시장 또는 종목에 이슈가 발생한 경우 상승하거나 하락 할 수 있습니다만, 이때 형성된 가격은 익일 장개시 시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정규장에 10.000원에 끝났으나 시간외단일가 시간에 11.000원에 종료된 경우라도 그 다음 날에는 10.000원을 기준으로 상·하한가가 결정되어 거래가 시작됩니다.

### [유의사항] 거래 시간 관련

주식등 주문시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을 잘 구분하여야 합니다. 정규시장과 시간외 시장이 서로 중복되는 시간이 있으니 잘 체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규시장에 접수한 주문은 정규시장 시간에만 유효하므로 시간외시장에 참여하고 싶으면 다시 주문을 내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정규시장 주문과 시간외시장 주문시 주문화면에서 선택하는 방식이 다르거나 별도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매매 시스템을 잘 확인하고 주문을 내어야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08 | 기타 매매계약체결방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앞(7번)에서 설명드린 단일가매매 및 접속매매 외에도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매매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시간외종가매매. <sup>2)</sup>시간외단일가매매. <sup>3)</sup>시간외대량매매. <sup>4)</sup>시간외바스켓매매, <sup>5)</sup>장중 대량·바스켓매매. <sup>6)</sup>경쟁대량매매(A-Blox) 등의 다양한 매매계약 체결제도가 있습니다.





### 가. 특별한 매매계약체결방법

### 1) 시간이즐기대때

시간외종가매매는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매매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규매매시간 종료 후 및 장 개시 전 일정 시간 동안 당일종가로 시간우선의 원칙만 적용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간외종가매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거래대상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당일 거래미형성 종목 제외)
거래 시간	08:30 ~ 08:40, 15:40 ~ 16:00(30분)
호가접수시간	08:30 ~ 08:40, 15:30 ~ 16:00(40분)
체결가격	당일종가(장 종료 후), 전일종가(장 개시 전)
주문유형	종기주문
매매체결	시간우선원칙을 적용
정정취소	주문가격의 정정은 불가, 매매체결전까지 수량정정 및 취소는 가능
매매수량단위	1주

#### 2) 시간인단일가메매

시간외단일가매매는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매매거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 종료 후 일정시간동안 10분 단위 단일가매매를 통하여 당일종가 ±10% 이내(대만, 당일 상·하한가 이내)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시간외단일가매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거래대상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당일 거래미형성 종목 제외)
거래 시간	16:00 ~ 18:00(120분)
매매방법	10분 단위 주기적 단일가매매
가격변동범위	당일종가 ±10%(다만, 당일 상·하한가 이내)
매매수량단위	1주
주문유형	지정가주문

### 3) 시간인대량매매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 시간 동안 매매수량단위의 5,000배(ETF-ETN : 500배)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의 호가로서 종목 및 수량이 동일한 매도·매수호가에 대하여 회원이 당일의 상·하한가 범위내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또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중 어느 일방은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합니다.

0

구분	주요내용
거래대상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당일 거래미형성 종목 제외)
거래 시간	08:00 ~ 09:00, 15:40 ~ 18:00(200분)
체결가격	투자자간 협상가격(당일 상·하한가 이내)
주문유형	주문내용이 일치하는 매도·매수 쌍방주문
매매수량	매매수량단위 5,000배(ETF·ETN: 500배) 이상 또는 수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이 1억 원 이상
매매체결	매도·매수 쌍방의 당해 호가 간 당해 주문가격으로 체결
정정, 취소	매매체결전까지 정정 및 취소 가능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 시작 전 후에 주식을 넘기는 거래. 이는 거래소 시장에서 한꺼번에 대량의 주식이 거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한 방안임. 다만, 장중 주가 급락은 피할 수 있으나 다음날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음

#### 4) 시간인바스켓매매

일정한 수 이상의 다수종목으로 구성된 주식집단을 시간외매매 거래시간 중에 일괄하여 매매거래 하고자 하는 매도 매수 쌍방주문에 대하여. 이를 당해 호가간에 체결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수량요건은 5종목 이상 그리고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가격은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 입니다. 또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중 어느 일방은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거래대상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당일 거래정지종목 제외)
거래 시간	08:00 ~ 09:00, 15:40 ~ 18:00 (200분)
체결가격	투자자간 협상가격(당일 상·하한가 이내)
주문유형	주문내용이 일치하는 매도·매수 쌍방주문
매매수량	5종목 이상 & 10억 원 이상
매매체결	매도·매수 쌍방의 당해 호가간 당해 주문가격으로 체결
정정, 취소	매매체결 전까지 정정 및 취소 가능

#### 5) 장중[내량/바스켓메매

장중대량매매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시간(09:00~15:30)동안 회원이 대량 및 바스켓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수량 요건은 시간외대량 · 바스켓매매와 동일하며, 가격은 당해호가 접수직전까지 형성된 최고· 최저가격 이내로 가능합니다. 또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중 어느 일방은 단일회원의 호가 이어야 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거래대상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 (당해 호가 접수직전까지 정규시장에서		
 거래 시간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09:00 ~ 15:30(390분)		
	03:00 ** 13:30(390군)   투자자간 협상가격 (당해 호가 접수직전까지 형성된 최고·최저가격 이내)		
^(1글/1글 주문유형	- 구시시간 합성기억 (성에 오기업무역전까지 항상된 최고 최시기억 이데) - 주문내용이 일치하는 매도·매수 쌍방주문		
 매매수량	수는데등이 물시이는 데도 메우 중중수는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 요건과 동일		
	매도·매수 쌍방당사자간 합의한 가격으로 체결		
 정정, 취소	매매체결전까지 정정 및 취소 가능		

#### 6) 경쟁[내량미HIH(A-Blox)

익명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의 일정규모(아래 참조) 이상의 대량호가를 정규시장 호가와 별도로 집중시켜 이들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때 체결가격은 당해 종목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으로서 장종료 후에 산출되어 각 당사자에 통보됩니다. 장중에는 경쟁대량매매 호가의 수량 및 체결정보는 미공개 되지만 종목별로 경쟁대량매매를 위한 매수·매도 호가의 유무 정보는 최소한의 거래정보로서 정규시장 중에 한하여 공개됩니다.

구분	주요내용			
거래대상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관리종목과 정리매매종목은 제외)			
거래 시간	(정규시장) 09:00 ~ 15:00 (시간외시장) 08:00 ~ 09:00			
체결가격	(정규시장) 체결시점 직후부터의 VWAP*. 다만, 정규시장 중 일반거래 미형성 등으로 경쟁대량매매에 적용할 VWAP가 없는 경우는 당일 종가 (종가가 없는 경우 기준가격)를 적용 * 체결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의 총거래대금 ÷ 총거래량 (시간외시장) 당일 VWAP* * 정규시장 개시 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의 총거래대금 ÷ 총거래량			
주문요건	최소호가규모 : 5억 원 이상(당일 기준가격×호가수량) 매매수량단위 : 100주			
매매체결	상대주문이 있는 경우 즉시 매매를 체결하는 연속매매(접속매매) 방식이 적용 되며,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먼저 접수된 주문부터 전량 체결			

## 09 | **삼장주식 거래 후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상장주식의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면 투자자는 증권회사와 결제를 하고, 증권회사는 거래소(또는 청산소)와 결제를 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종결됩니다.

주식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두 번째 거래일(T+2일)에 결제됩니다.



#### 가. 상장주식시장의 결제방법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주식의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면 투자자는 증권회사와 결제를 하고, 증권회사는 거래소(또는 청산소)와 결제를 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종결됩니다.

주식의 경우 매매거래일로부터 두 번째 거래일에 결제됩니다.

증권시장에서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거래를 하기 때문에 결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와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1) 첨산(Clearing)

주식의 매매체결이 끝나면 한국거래소는 회원인 증권회사들 간에 성립된 매매거래에 개입하여 모든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되고, 모든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되는 중앙거래당사자(CCP)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채권·채무를 차감하여 확정하고 결제기관에 결제지시를 하며 결제가 이행되기까지 결제를 보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청산(Clearing)이라 하며, CCP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청산기관 (Clearing House)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에 의거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분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산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째, 청산기관이 결제이행을 보장하고 동시에 차감을 통해 결제규모와 결제건수가 축소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위험이 없어집니다.

둘째로 증권회사는 청산기관의 신용을 믿고 매매를 할 수 있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청산 기관과 직접 결제를 하게되므로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셋째로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 증권회사의 결제대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청산기관이 즉시 유동성을 투입함으로써 시장의 연쇄적인 결제지연 또는 결제불이행 발생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2) 결제(Settlement)

결제란 청산과정을 통해 확정된 채권과 채무를 중앙거래당사자(CCP)와 회원 간에 증권의 인도 및 대금의 지급을 이행함으로써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결제대상 증권의 인도는 계좌간대체방식으로 예탁결제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대금지급은 계좌 간 대체방식으로 결제은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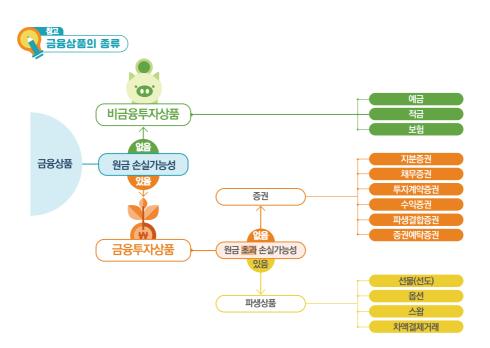
ယ

## 10 / 주식과 유사한 금융투자상품도 많던데... 금융투자상품이란 무엇인가요?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투자한 원금의 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의 초과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됩니다.



## 11 |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 파생 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 있습니다.

	구분	종류
	지분증권 채무증권	주권(주식), 신주인수권 등
		국채, 지방채, 전환사채 등
ᄌ긔	투자계약증권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	수익증권	신탁수익증권 등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ELS) 등
	증권예탁증권	국내 증권예탁증권(KDR) 등



#### 가. 증권의 개념 및 종류

#### 1) 지분증권





주주의 출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식은 국내 주식과 국외주식으로 구분됩니다. 증권시장(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 여부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주식과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으로 구분됩니다.

주권 (주식)

> 국외 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은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 구분됩니다.

신주 인수권

회사가 합병. 증자 등을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 자체도 상장이 가능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식등 개념에 포함되며, 신주인수권 증서와 신주인수권증권으로 구분됩니다.

#### 2) 채무증권

국채

정부가 금전차입을 목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하여 국회의 … 의결을 얻은 후에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 주택채권 등이 있습니다.

지방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상수도공채 등이 있습니다.

트수채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 특별법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한국전력공사채권, 기술개발금융 채권, 토지개발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등이 있습니다.

회사채

상법상 주식회사가 특정인 또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회사가 채무자임을 표시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사채(社債)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회사채는 주식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 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타

통상적인 채권은 아니지만 단기 자금수요를 충당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 기업어음(CP),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있습니다.

#### 3)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 4) 수익증권

#### 가)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수익증권이란 고객이 맡긴 재산을 신탁업자가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가 표시된 증권을 말합니다. 금전신탁계약은 신탁업자가 수탁하는 재산의 종류별로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신탁 인수 시 신탁재산으로 금전을 수탁하여 신탁 종료시에 금전 또는 운용자산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입니다.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과 지정 하지 아니하는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신탁을 운용하므로 신탁상품 보다는 신탁계약의 형태를 가지며「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불특정금전신탁의 주요 상품으로는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 신탁 등이 있으나 2004년 1월 이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개인연금신탁을 제외하고 신규판매가 대부분 금지 되었습니다.



신탁 인수 시 신탁재산으로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을 수탁하여 ··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관리·처분·운용한 후 신탁 종료 시에 금전 또는 신탁 재산의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 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금 등을 모은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회사 등)가 그 재산을 신탁업자(은행 등)로 하여금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 형태)으로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한 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은 위탁자인 집합투자 업자가 수탁자인 신탁업자와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을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운용하도록 신탁업자에게 지시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 5) 피생결합증권



#### 가)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 Linked Warrant)

미래 일정시점에 특정 주식 또는 주가지수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 팔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옵션과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ELW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 나)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과 기타파생결합증권 (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투자금을 주식·주가지수·채권·원자재·통화·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입니다. ELS와 DLS는 상품의 구조나 운용방식은 비슷하나,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을 ELS라하고, 그 외 금리·환율·일반상품의 가격 및 신용위험 지표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을 DLS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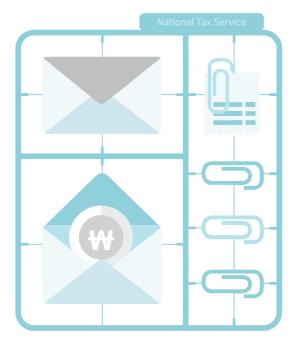
#### 다)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



기초지수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 증권의 일종으로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되며, 만기 이전에 반대 매매가 가능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ETN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별도의 중도 상환 절차 없이 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확정할 수 있어 상장지수펀드(ETF)와 유사합니다.

#### 6) 증권예탁증권(DR, Depositary Receipts)

증권예탁증권이란 지분증권·채무증권·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파생결합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즉, 기업이 국외자본 조달 목적 등으로 원주(原株)는 한국 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동 원주를 기반으로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식대체증서를 말합니다.







제2장

# 주식등 양도소득의 이해

## 12 | 주식등에 부과되는 세금이 종류를 알고 싶어요



주식에 대한 과세는 주식을 보유할 때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와 주식의 유·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주식의 보유에 대해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주식의 유상 이전에 대하여는 거래세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및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세(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주식에 대한 세금

구분	이전(취득)		보유(배당)	이전(양도)		
TE	유상	무상	<b>工</b> π(៕6 <i>)</i>	유상	무상	
과세여부	_	과세	과세	과세	_	
세목	_	증여세 (상속세)	배당소득세* or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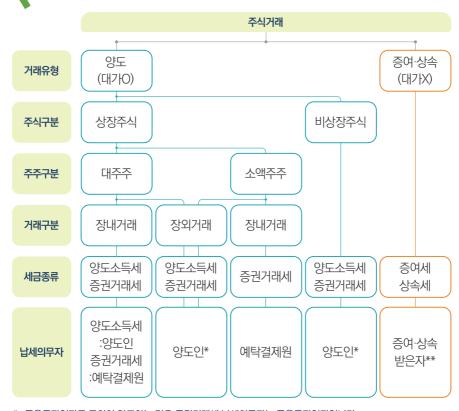
<sup>\*</sup> 관련 지방소득세도 부과

## 13 |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금융투자업자입니다.
- \*\* 증여·상속의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14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증권예탁증권(DR)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국외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이 종류 및 구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증권예탁증권(DR)이 포함됩니다.

국내주식등 및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출자지분의 개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출자지분은 주로 인적회사의 지분을 의미하며, 여기서 인적회사란 사원 상호간의 결합 관계가 깊고 회사의 활동이 사원들의 인적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사로 사원들이 공동 출자하고 경영에도 참여하며 책임도 함께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대표적인 인적회사에 해당합니다.

ယ

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장주식등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대주주 외의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2) 비상장주식등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주주 외의 자가 K-OTC(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 시장)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국이주식등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경우로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4)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이란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주 및 채권자 등에게 부여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금조달 방법에 따라 그 권리의 부여 형태가 상이합니다.

#### 가) 신주인수권증서

유상증자 시 다른 사람에 비해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문서화한 증서로, 기존주주\*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시 발행합니다.③

\* 주주는 보유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가 있음(상법 §418조①)

#### 나) 신주인수권증권

일정한 권리행사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문서화한 증서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시 낮은 이자율을 대신하여 사채권과 별도로 채권자에게 발행합니다 4)

\*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s): 신주인수권증권이 부여된 사채로 채권과 신주인수증권의 분리가능 유무에 따라 분리형과 비(非)분리형으로 구분

<sup>3)</sup> 상법 §420의2

<sup>4)</sup> 상법 §516의5

#### 5) 증권예탁증권(DR: Depositary Receipts)

기업이 국외자본 조달 목적 등으로 본래 주식인 원주(原株)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동 원주를 기반으로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식대체증서를 말하며, DR은 일반적으로 유통 활성화 목적 등으로 NYSE<sup>1)</sup>, AMEX<sup>2)</sup>, NASDAQ<sup>3)</sup>, LSE<sup>4)</sup>, LuxSE<sup>5)</sup> 등을 통해 상장거래 됩니다.(장·내외거래 모두 가능)

1) 뉴욕증권거래소, 2) 아메리칸증권거래소, 3) 미국장외주식시장, 4) 런던증권거래소, 5) 룩셈부르크증권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배당·증자 참여 등 주주권을 행사(DR에 배당금 지급 시 한국예탁결제원이 배당소득 원천장수)하는 등 일반주권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며, 2011년 이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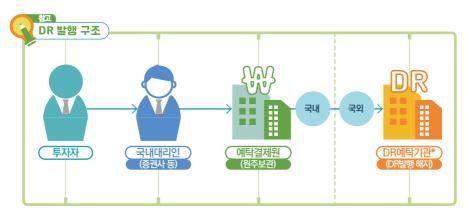


①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s): 미국시장에서 발행·유통되는 DR

② GDR(Global Depositary Receipts): 미국 및 유로시장에서 동시 발행되며 국내

기업이 가장 많이 이용 하는 방식

③ KDR(Korean Depositary Receipts):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발행한 DR



\* DR예탁기관 : 국외에서 DR 발행·해지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내의 DR발행사와 발행에 대한 권리, 절차 등의 계약을 맺음 (Bank of New York Mellon, Citibank N.A., Deutsche Bank Trust Company, Jp Morgan Chase Bank)

## 15 | **얌도**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개념

- 1. 매도: 매매를 매도자 측면에서 바라본 것으로, 매매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563) 매매의 결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러한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민법 §568)
- 2. 교화: 민법상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 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한편,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민법의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567, §596, §597)
- 3.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부동산 등 금전 외의 양도 가능한 재산으로서 회사의 설립 시 또는 신주발행 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 16 | 삼잠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내주주의 범위]가 궁금해요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종목별 지분율이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2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 1. 1. 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0억 원

이 경우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국기법상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및 친족. 경영지배관계 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며. 최대주주이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으로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연도별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요약

보유 주식이 아래의 기준 이상인 경우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

구분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정 <sup>3)</sup>	
TE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13. 6. 30. 이전	3%	100억 원	5%	50억 원	_	_
'13. 7. 1. 이후 <sup>1)</sup>	2%	50억 원	4%	40억 원	4%	10억 원
'16. 4. 1. 이후2)	1%	25억 원	2%	20억 원	4%	10억 원
'18. 4. 1. 이후	1%	15억 원	2%	15억 원	4%	10억 원
'20. 4. 1. 이후	1%	10억 원	2%	10억 원	4%	10억 원
'24. 1. 1. 이후	1%	50억 원	2%	50억 원	4%	50억 원

- 1) 13. 7. 1. 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22)
- 2) '16.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1)
- 3) 코넥스 시장은 '13. 8. 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sup>6)</sup>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가 해당법인의 주주 1인들 중 최대인 경우 해당 주주를 말함

## 17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중 최대주주 판점 시 보유지분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2023년 이후 양도분 부터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나, 대주주 중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구분	특수관계인의 범위		
친족	① 4촌이내 혈족 ② 3촌이내 인척 ③ 배우자 ④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⑤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		
경영 지배 관계	①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상기 친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상기 친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상기 ①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특수관계 판단은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함(국기법 §2, 20호)

## 국기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원칙적으로 <mark>쌍방관계</mark>를 기준으로 판단(국기법 §2, 20호)

#### 1. 친족관계

- ①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②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 ③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친생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④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 혈족의 범위



- \*\* 인척: 자기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2. 경제적 연관관계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에는 적용 배제



#### 3. 경영지배관계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



- \* 본인 등 : 본인, 친족 및 경제적 연관관계자
- \*\* 지배: i) 영리법인: 30% 이상 출자 or 임원 임면권행사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
  - ii) 비영리법인: 이사의 과반수 차지 or 3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

####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



- \* 지배 : 직접 또는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 1차·2차 지배 :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동일

## 18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대주주 판정은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대주주 판정기준일은 주식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되, 지분율 기준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기준에 미달했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그 취득일 이후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기

대주주 판정은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지분율 기준

주식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기준에 미달했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그 취득일 이후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2) 시기총액 기준

항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생고 삼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점

2023. 8.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12월말 법인(사업연도 1.1.~12.31.)은 2022.12. 31. 3월말 법인(사업연도 4. 1. ~ 3. 31.)은 2023. 3. 31.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 휴일등으로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합니다.

# 제2점 주식등 양도소득이 이하

## 19 | 삼잠주식을 연도 말에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나요?



주식등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하므로 매도체결 시기와 매도 대금을 수취하는 시기가 다른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실제 양도시기를 유의하여 거래하셔야 합니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매도체결일부터 2일(휴일 제외)이 되는 날에 매도대금이 지급되므로. 결제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 超卫

####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사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 31. 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 28.까지 거래(체결) 하여이만 12.30.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12, 29, ~ 12, 30, 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납세자 甲의 보유 잔고가 12. 28. 기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12. 29. 이후 잔고를 처분하였더라도 해당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주식보유현황에 처분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연도 말 기준 甲은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 사실상 대주주 판단 기준일

대주주 판단 기준일

체결일(T) 영업일(T+1) 영업일(T+2) 휴장일 12.28 12, 29, 12, 30, 12.31

다음연도에 결제일 도래 ▶▶ /

예) '23년 양도 주식(12월 결산법인)은 '22.12.30.이 한국거래소 휴장일이기 때문에 연도 내에 결제가 이루 어지는 마지막 날짜인 '22.12.27. 계약체결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게 됨

## 20 | 법인이 연도 중 신설되었거나 합병·분할한 경우 [내주주 요건 판정기준일은 언제가 되나요?



법인의 신설, 합병, 분할 시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피합병 법인의 합병등기일

분할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신주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분할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신설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

## 21 기타 대주주 판정 시 유의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주식등을 대여한 경우,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경우, 연도 중에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가.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등 대주주 판단시 유의사항

#### 1) 주식등 대여 시 대주주 판단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sup>7)</sup>

#### 2)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시 대주주 판단

거주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sup>3)</sup>

#### 3) 연도 중에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방법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판단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 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

<sup>7)</sup> 소득령 §157⑩

<sup>8)</sup> 소득령 §157⑪

## 22 | '23년 말에 삼잠주식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 이삼으로 완화되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23년 말에 상향된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50억 원) 기준은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24년 상반기 양도분에 대하여 '24년 8월 예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대주주 기준(금액) 상향 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23. 12. 21. 배포)

##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상향 (종목당 10억 원 ▶ 50억 원)은 올해부터 적용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직전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보유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자로 금년에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 기준 종목당 50억 원 미만 주식보유자의 경우 내년 상장주식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금년에 보유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2점 주식등 양도소득의 이해

## 23 | 비상장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대주주만 해당되나요?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인 K-OTC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1.1. 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0억 원

# 한국잠외시잠(K-OTC)과 코넥스(KONEX)시잠 비교

구분	K-OTC 시장(Korea Over The Counter)	코넥스 시장(Korea	New Exchange)
개요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설·운영하는 제도화 조직화된 장외시장 (자본시장법 §286, 시행령§178)	코스닥 상장요건을 벤처기업과 중소기 조달을 할수 있도록 ( 시장법시행령 §11(2) * 코넥스시장 주식의 세법 소득법 상증법	업이 원활히 자금 벌립된지본시장(자본 )))

구분	K-OTC 시장(Korea Over The Counter)	코넥스 시장(Korea New Exchange)
성격 기능	<ul> <li>법적 근거를 통한 조직화·제도화된 장외시장</li> <li>비신청지정제도 도입</li> <li>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등 편입</li> <li>투자편의성 및 결제안정성 제공</li> <li>호가정보와시세정보가 투명하게 공개</li> </ul>	중소기업만 상장 가능한 초기 중소기업에 특화된 시장     진입방법을 다양화하고 진입 요건도 최소화     중소기업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일반 투자자의 시장참여 허용(모험 자본의 선순환 지원)     M&A의 지원 및 합병요건 완화
운영 제도	전입: 등록 또는 지정     퇴출: 최종부도, 피흡수 합병, 불성실 공시, 정규시장 상장 등     공시         - (등록법인) 정기(결산감사, 반기 검토) 및 수시 공시(주요경영사항 17가지)         - (지정법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미제출	전입: 주권양도 제한 없을 것, 감사의견 적정,통일규격증권발행,지정 자문인 1사와 선임 계약체결 등      퇴출: 감사의견거절, 공시서류미제출,기업설명회미개최,부도해산등      공시: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 보고서,기업 IR개최(연2회)등
현황	'23. 2. 현재 149개 법인, 149개 종목	'23. 2. 현재 134개 법인, 134개 종목

## 24 | 미국 증권시장에 삼잠된 주식을 얌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비상장주식등과 마찬가치로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외주식의 개념

외국법인이 발행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과 국내법인이 발행하고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 25 |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해외에 상장된 ETF(상장지수펀드)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sup>설교</sup> ETF(Exchage Traded Fund)의 개념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 성격을 갖는 금융투자상품

\* 인덱스펀드: 일반 주식형 펀드와 달리 KOSPI 200과 같은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쫒아가도록 구성한 펀드



## 26 |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국내주식과인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도 국내주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10~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주식과 달리 20%(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예정신고 의무없이 확정신고 의무만 부담하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구분	내용					
十世						
	•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 <sup>1)</sup> (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과세범위	1) 코스피(1%·50억 원 이상 <sup>2)</sup> ), 코스닥(2%·50억 원 이상 <sup>2)</sup> ), 코넥스(4%·50억 원 이상 <sup>2)</sup> )					
되게리지	2) '2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 1. 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0억 원					
	•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기	'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국내·도	·외주식 손익통산('2	 0. 1. 1.이후 양도분)			
소득통산		산 양도소득금액과				
OFE-210H			000/160			
양도가액	• 양도 등	시의 실지거래가액				
피스캠비	• (취득기	액) 취득 당시의 실기	지거래가액			
필요경비	• (양도비	등) 증권사 수수료 등				
	•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원					
기본공제		· 기기 기 등				
	• 국내주식					
	구분 세율					
		. –	<u></u>			
	중소	소액주주	10%			
	기업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세율		소액주주	20%			
	중소 기업 외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716-4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 국외주식 : 20% (중소기업 주식은 10%)					
	• 국내주	식 : 예정 및 확정 신	 고·납부			
신고납부	• 국외주식 : 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 27 |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요?**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은 소득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28 |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주식등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대금청산일'이 됩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대하여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가. 양도 및 취득시기

주식등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그 양도 및 취득시기는 거래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일반적인 거래

#### 1) [내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대금청산일'이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합니다.(대법원2013두2034, 2014, 6, 12.)

#### 2) [내급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 3) [내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 4)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지산의 취득시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이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 다. 특수한 거래

#### 1) 수 개인 지산 중 양도한 지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수 개의 자산 중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2) 주식을 교환한 경우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청산한 날이 됩니다.

#### 3) 경매 또는 공매인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낙찰받은 자가 매각조건에 따라 경·공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됩니다.

#### 라. 취득시기의 의제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은 1986.1.1.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경우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sup>9)</sup>은 제외됩니다.

#### 9)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종류

- ③ (특정주식)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과 해당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그 법인이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비중을 반영하여 계산한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사업으로서 일정 시설(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법인

## 29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식등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 원)를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가. 주식등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주식등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1) 양두차익(양두수득금액) 계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기액, 양도비용 등)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주식등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이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

#### 2)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1) 에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1인당 250만 원 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3)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2) 에서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4) 납부할세액 계산

3) 에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신고· 납부 등 의무 위반과 관련한 가산세를 더하면 총결정세액이 되고, 총결정세액에서 기 예정 신고납부세액, 기결정·경정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할세액이 됩니다.